



제421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

방어해면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행정상 강제에 관한 사항 「행정기본법」 적용〉

■ 강대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017호)

2025. 2.

국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오 명 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강대식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 2024. 11. 28.
3. 회 부 일 : 2024. 11. 2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행정상 강제에 관한 사항 「행정기본법」 적용

- ☐ 개정안은 관할통제권자¹⁾가 방어해면구역²⁾에서 퇴거의 강제 등을 조치할 경우, 「행정기본법」 제32조(직접강제) 또는 제33조(즉시 강제)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신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퇴거의 강제 등) (생략) <신설>	제7조(퇴거의 강제 등) ① (현행 제 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조치 중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른다.

- ☐ 방어해면구역은 현행법 제2조제1항³⁾에 따라 대통령이 군사상 방어가 필요한 해면에 대하여 전시·사변이나 그 밖에 군사상 특히 필요할 때, 영해의 전부 또는 일부에 지정하는 구역을 말하는 것임.

- ☐ 지정된 방어해면구역을 출입하거나 항행하려는 모든 선박은 관할 통제권자(해군작전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1) 해군작전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

2) 군사상 방어가 필요한 해면에 대하여 전시·사변이나 그 밖에 군사상 특히 필요할 때, 영해의 전부 또는 일부에 지정되는 구역(지정권자: 대통령)

3) 「방어해면법」 제2조(지정과 고시 등) ① 대통령은 군사상 방어가 필요한 해면에 대하여 전시·사변이나 그 밖에 군사상 특히 필요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영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방어해면구역(防禦海面區域)으로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

방어해면구역에 있는 모든 선박은 관할통제권자가 군사작전상 필요하여 내리는 사항에 관한 명령을 따라야 함.

또한, 관할통제권자는 방어해면구역에서 해안의 굴착, 해상운송 등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고, 제한 또는 금지된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통제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방어해면구역 관련 허가, 의무, 행위의 제한]

구분	내용
방어해면법 제4조(출입과 항행의 허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방어해면구역(이하 “방어해면구역”이라 한다)을 출입하거나 항행하려는 모든 선박은 해군작전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이하 “관할통제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방어해면법 제5조 (선박의 의무)	방어해면구역에 있는 모든 선박은 관할통제권자가 군사작전상 필요하여 내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명령을 따라야 한다. 기적(汽笛)·기류(旗類)·발광·등화·무선통신이나 그 밖의 선박 신호·통신에 관한 사항 2. 출발·정지·정박·항로변경이나 그 밖의 선박 항행에 관한 사항
방어해면법 제6조 (행위의 제한 등)	① 관할통제권자는 군사작전상 필요할 경우에는 방어해면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해안의 굴착(掘鑿) 2. 해면의 매립 또는 준설(浚渫) 3. 시설물의 설치 또는 변경 4. 해상운송 5. 어로 또는 해조(海藻)의 채취 6. 부표(浮標)·입표(立標)나 그 밖의 표지의 설치 또는 변경 7. 각종 총포의 발사 또는 폭발물의 파열 8. 광물·토석 또는 토사(土砂)의 채취 9. 표류물 또는 침몰물의 습득 10. 그 밖에 군사작전 수행에 심한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라 제한 또는 금지된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통제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 현행법 제7조4)에서는 관할통제권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어해면구역을 출입 또는 항행한 선박, 제5조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선박 및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한 또는 금지된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방어해면구역에서 퇴거하도록 명령하거나 강제로 퇴거시킬 수 있고, 또한 시설물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개정안은 방어해면구역에서의 강제 퇴거 등과 같은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는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체계를 실현하기 위해 제정된 「행정기본법」의 관련 규정을 따르도록 하려는 것으로,

관할통제권자가 행정상 강제를 할 경우, 「행정기본법」의 ‘직접 강제’ 또는 ‘즉시강제’에 관한 조문을 적용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여 의무자에게 직접강제 이전에 여러 절차(집행책임자의 증표제시, 이행 기간 부여, 계고, 통지 등)⁵⁾가 있는 점을 인지하게 함으로써

4) 「방어해면법」 제7조(퇴거의 강제 등) 관할통제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선박에 대하여는 방어해면구역에서 퇴거하도록 명령하거나 강제로 퇴거시키거나, 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어해면구역을 출입 또는 항행한 선박(외국의 군함 및 비상업용 정부선박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2. 제5조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선박
3.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한 또는 금지된 행위를 한 자
- 5) 즉시강제의 경우 증표제시, 즉시강제 이유 및 내용 고지 등

의무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의무 이행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됨.

[행정기본법 제32조(직접강제), 제33조(즉시강제) 조문]

구분	내용
행정기본법 제32조 (직접강제)	① 직접강제는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방법으로는 행정상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직접강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임자는 그가 집행책임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직접강제의 계고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행정기본법 제33조 (즉시강제)	① 즉시강제는 다른 수단으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최소한으로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즉시강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임자는 그가 집행책임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 주어야 하며, 즉시강제의 이유와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집행책임자는 즉시강제를 하려는 재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현장에서 그 소재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강제를 실시한 후 집행책임자의 이름 및 그 이유와 내용을 고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적절한 방법에 의한 공고로써 고지를 갈음할 수 있다. 1. 즉시강제를 실시한 후에도 재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재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국외에 거주하거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고지할 수 없는 경우

또한 행정상 강제⁶⁾에 대해 「행정기본법」상의 개별 조문을 따르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한 입법례가 있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

[행정상 강제에 대해 「행정기본법」 조문 적용 유사입법례]

법률명	내용
농어촌정비법	제133조(이행강제금)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5조의5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내에 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소유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치 명령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최초의 조치 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조치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u>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u>

☐ 다만, 「행정기본법」 제5조제1항7)에 따르면 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정안의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국방부는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나, 동 법에 따른 강제조치는 국가안보상 긴급한 상황에서 이루어져 「행정기본법」에 따른

6) 행정기본법에 따른 행정상 강제는 행정대집행, 이행강제금의 부과, 직접강제, 강제징수, 즉시강제로 구분됨.

7) 「행정기본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절차를 준수하기 어려운 시간적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국가 안전보장·국방을 위해 긴급한 경우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308

※ 참고자료

1. 행정상 강제외의 종류

구분	내용
행정대집행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법령등에서 직접 부과하거나 행정청이 법령 등에 따라 부과한 의무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률로 정하는 다른 수단으로는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그 불이행을 방지하면 공익을 크게 해칠 것으로 인정될 때에 행정청이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스스로 하거나 제3자에게 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
이행강제금의 부과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적절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금전급부의무를 부과하는 것
직접강제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그 행정상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
강제징수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 중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그 행정상 의무가 실현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
즉시강제	현재의 급박한 행정상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정청이 곧바로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행정목적의 달성을 하는 것 가. 행정청이 미리 행정상 의무 이행을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나. 그 성질상 행정상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행정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